목차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0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04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09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0
제5관 공제료의 납입 13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1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6

특별약관

권리침해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19
전자서명키사고 부담보 특별약관 19
등록기관 담보 특별약관 19
교차배상특별약관 20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20
약정배제 특별약관 20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21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21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22
WAR AND TERRORISM EXCLUSION 23
Payment of premium/claim clause 23
웜바이러스 사고 부담보 특별약관 24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24
전기적 사고 담보 특별약관 24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24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25

보통약관

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가입대상 및 목적)

① 이 공제의 가입대상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함)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사와 보험업무 및 보상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공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사고처리 및 보상업무는 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그 책임하에 수행합니다.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공제조합 사이에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 피공제자란 아래를 말합니다.
     1. 공제증권에 피공제자로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공제자
     2. 기명피공제자의 자회사
     3. 기명피공제자의 전, 현직 임원, 직원, 수탁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

     단, 각각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배상책임: 공제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나.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 보상한도액: 공제조합과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라.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마.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바. 대위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공제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관련 용어
   가.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이란 아래를 말합니다.
      1.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설계,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컨설팅, 보수, 공급, 설치, 관리 및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2.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제공
      3. 인터넷 사이트의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및 광고
      4. 전자메일 또는 호스팅 서비스
      5. 채팅방과 게시판의 유지 및 관리
      6. 인터넷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
      7. 피공제자와 제3자간의 거래행위,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
      8.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의 접속수단 제공
   나. 자회사: 직접적이든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한 간접이든 관계없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총수의 40%(단, 보장지역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50%) 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을 말합니다.

제2관 |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장지역 내에서 피공제자가 피공제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부작위를 포함합니다. 이하 「행위)라 합니다)에 기인하여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조합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회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증권상에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담보일자 이전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6. 피공제자에게 아래에 의하며, 또는 아래를 위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가. 다른 피공제자
   나. 피공제자를 대리하거나 피공제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체
   다만, 상기 가목, 나목이 피공제자의 고객으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장합니다.
7. 국가 무역관련기관 또는 국가 통신관련기관 및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기하는 배상청구. 단, 그러한 기관이 피공제자의 고객으로서 제기하는 배상청구는 보장합니다.
8. 이 계약의 공제기간 개시일 이전에 피공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공제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9.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전류 불안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지원 또는 구성하는 통신선, 데이터 전송선 또는 여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0. 특허권 침해(「특허권 침해」라 함은 특허법 제127조에 규정된 행위를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11.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13. 직·간접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포르노, 섹스물 또는 외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4. 위성의 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5. 결함 있는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16.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및 피공제자의 생산물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7.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8.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피공제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조사하여 구하지 않음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19.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코드(바이러스)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조사하여 구하지 않음에 기인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제5조(손해배상 청구일자)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2항의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봅니다.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청구자의 성명 및 그의 주장, 피공제자가 최초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지한 상황 및 그 원인
4.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단,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알았을 경우 그 상황 또는 원인의 내용 및 발생일, 관계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공제사고의 발생을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경우를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피공제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③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에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계약의 공제기간 중에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합니다.

제10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소송비용,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① 보험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해결에 앞서 미리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 제2호의 다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공제자는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방어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한도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피공제자는 미리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거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6조(대위권)

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조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2(양도)

공제 목적의 양도는 공제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조합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기록의 완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관 |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공제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공제조합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공제조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3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공제조합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공제조합 온라인창구 포함)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공제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공제자
5. 보상한도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공제조합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공제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6조(조사)

①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공제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보고연장보장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30조(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공제료를 납입하면 제31조(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조합이 이 공제를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공제증권상의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장일자로 하는 공제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조합이 이 공제증권를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공제로 대체했을 경우

제29조 (보고연장보장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조합이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장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2.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공제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공제증권 상의 소급보장일자부터 공제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공제조합에 통지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공제나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제2호에 따라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통지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내용에 준용하여 서면으로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장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선택보고연장보장기간)

①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장기간은 이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1. 공제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장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5관 | 공제료의 납입

제32조(제1회 공제료 등 및 공제조합의 보장개시)

① 공제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공제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조합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제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33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4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공제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제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제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공제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32조(제1회 공제료 등 및 공제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공제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3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공제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공제조합은 다른 공제 및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제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보험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보험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공제조합은 제40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공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공제년도의 공제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공제년도에 속하는 공제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제4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공제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4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공제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공제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6조(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7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약관

권리침해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의 인격 침해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2. 지적재산권(의장권, 신용신안, 상표권, 상호권을 포함합니다.)의 침해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자서명키사고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 등의 업무(이하 '전자인증서비스' 라 합니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 또는 가입자의 요청에 의해 보관중인 가입자의 전자서명키의 위조, 변조, 유출, 도난 등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기인한 배상청구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등록기관 담보 특별약관

제1조(추가피공제자)
공제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기명피공제자의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 등의 업무(이하 `전자인증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한 등록 기관도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등록기관이 입은 아래의 손해 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에게 위임을 받지 않은 업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2. 등록기관이 기명피공제자의 전자인증서비스 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특별약관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약정배제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이에 대한 공제료 납부를 전제로 공제자와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와 피해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공제자는 그 약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공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와 피해자 간에 소송 판결을 통해 배상책임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증권 및 배서의 다른 제 규정 및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에서 담보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1)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락 등,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상기 (1), (2), (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보험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WAR AND TERRORISM EXCLUSIO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or any endorsement thereto it is agreed that this insurance excludes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 of war/terrorism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o the loss.

For the purpose of this endorsement an act of terrorism means an 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and/or the threat thereof, of any person or group(s) of persons, whether acting alone or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rganisation(s) or government(s), committed for 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or similar purposes including the intention to influence any government and/or to put the public, or any section of the public, in fear.

This endorsement also excludes loss,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our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taken in controlling, preventing, suppressing or in any way relation to any act of terrorism.

If the insures allege that by reason of this exclusion, any loss, damage cost or expense is not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burden of proving that such loss, damage, cost and expense does not fall within this Exclusion shall be upon the Assured..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is endorsement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Payment of premium/claim clause

1. It is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premium for this policy shall be paid or returned to the company / policyholder in Won currency applying to the first notified T/T selling rate of exchange by Korea Exchange Bank

① Premium : Date of application
② Additional / Return premium: Date of endorsement
③ Refunds of surrenders : Date of surrender
④ Installment premium : Due date

2.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e claims paid shall be paid Won currency applying to the first notified T/T selling rate of exchange by Korea Exchange Bank or the Certificate Of Foreign Exchange equivalent to currency at the date of loss payment

웜바이러스 사고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조합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기인하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웜바이러스' 에 기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기인한 배상청구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전기적 사고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을 첨부하고 이에 대한 공제료 납부를 전제로 공제자와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이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이중전원공급장치 및 자가발전장치를 포함한 합리적 수준의 방지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피공제자의 관리, 통제하에 있는 전기적 시설로 인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기존 증권 및 배서의 다른 제 규정 및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손해처리협조 특별약관

기타 재보험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은 본 재보험 계약에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1. 원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청구 가능성을 통지 받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시킬 만한 상황을 통지 받은 경우, 재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원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재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합의, 절충 및 중재를 통제하기 위해 조정인 또는 대리인을 임명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4. 재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이뤄질 수 없으며, 배상책임여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